교육부 주요 주장별 검토의견

[주장1] 사립유치원은 개인 사업자다.

⇒ (**사실관계 1**)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이자 비영리 교육기관**입니다. '**유치원 설립 행위**'는 설립자(사립학교 경영자)가 자신의 교지·교사를 활용하여 유치원 설립기준에 따른 시설·설비를 갖추고 **유치원 교육활동에 제공**한다는 **인가를 자발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교육부 주장에 대한 반론 1

1.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이중적 지위

① 현재 사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상 규정되어 있는 학교의 형식(形式)을 가지고 있으나(사립학교법 제 2조 제 1호 및 제 3호), 일반적인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 2조 제 2호)과는 다르게, 개인사업자의 실질(實質)을 가지고 있습니다.

② 특히,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은 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증과 그 형식과 실질이 동등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있으며, 대한민국 검찰 또한 사립유치원을 '비영리 개인사업자로서,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와 유사하다.'고 표명한 바 있습니다.(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6년 형제 10626호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6 형제 1117호)

③ 다시 말해,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은 (a) 유아교육이라는 공공성은 물론, (b) 개인사업자성 · 사유재산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특수한 법률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④ 특히 상기한 교육부의 지적은, 사립학교법 상 학교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 개인사업자적 성격을 원천적으로 가질 수 없다는 법률적 ·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개인사업자의 사유재산에 대한 취급

⑤ 무엇보다 교육부는, 설립인가 당시 설립자가 교지(校地) · 교사(校舍)를 「제공(提供)」했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표현」으로,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 · 재단법인과 같이 개인의 사재를 법인의 재산으로 희사(喜捨)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⑥ 물론,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은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유치원 재산에 관한 각서」를 작성하면서, 교지·교사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을 스스로 (한시적이나마)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안정적인 유아교육을 위한 자발적 제약일 뿐이지, 「관할청에게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겠다는 사유재산권 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유치원 운영에 관한 각서]

본인 설립자 은(는) 유치원을 설립 운영함에 있어 **제반 법령과 지시, 법규 및 사인가항을 준수하고 유치원 운영에 재정적자가 있을 시 본인이 책임지고 재정을 보조하여 유치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동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유아교육법 제34조에 의하여 법적 제재(시정명령 또는 폐쇄명령)를 받아도 이를 감수하겠기에 이를 서약합니다.

⑦ 무엇보다,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당시 추가로 작성하는 「유치원 운영에 관한 각서」에는, 설립자·원장의 운영에 대한 「재정적 책무」을 적시하고 있는 바, 그 자체로 『개인사업자로서의 무한책임(無限責任)』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통)재산기증승낙서

2. 위 재산은 아래 본인소유의 재산인 바, (가칭)사단/재단법인 ○○○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성하여 위 재산을 귀 법인의 보통재산으로 인감증명서 첨부, **정히 기증함을 승낙함**

(가칭)사단/재단법인 ○○○ 귀중

⑧ 더불어,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은 재산을 출연하면 필수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

「재산기증승낙서」와 같은 서식을 별도로 작성한 적도 없고, 심지어 「재산세」까지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재산을 제공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언어도단(言語道斷)」이라 하겠습니다.

[주장2]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라 법인보다 원래 자유가 많다.

⇒ (**사실관계 2**) 사립유치원이 개인사업자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어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용역의 특성을 고려해 면세대상여부를 구분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은 교육용역으로 면세대상으로 구분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차별 또는 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육부 주장에 대한 반론 2

① 먼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이, 교육부의 주장과 같이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라 법인보다 원래 자유가 많다」는 우발적(偶發的)·비체계적(非體系的) 주장을 명시적으로 표명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② 무엇보다, 법인(法人)의 재산과 개인(個人)의 재산은 법률적으로 완벽히 다른 실질을 가지는 것입니다.

③ 학교법인의 경우는 개인의 사재(私財)를 출연하여 독립한 법인격에 해당 재산을 귀속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는 바, 해당 재산은 더 이상 설립자의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이 때문에, 법인 재산에 대한 설립자의 횡령죄(橫領罪)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④ 그러나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학교법인과 같이 사재를 출연하는 법률행위가 전무하며, 교지·교사가 개인의 소유권으로 변함없이 존속하는 바, 이 때문에 재산세까지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⑤ 특히, 교육부의 주장은 차별·우대라는 법률적 개념 자체를 몰이해(沒理解)하고 있는 바, 헌법상·법률상 보장된 평등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실질적 평등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⑥ 그러한 차원에서,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과 학교법인의 법인재산 간의 법률적 실질에 차이」를 두는 것이야말로, 「헌법상 · 법률상 보장된 실질적 평등의 실현」이라 할 것입니다.

[주장3]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로 재산세, 취득세를 낸다.

⇒ (**사실관계 3**) 사립유치원은 학원과 달리 사립학교법 · 유아교육법상 **'학교'로서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재산세 · 취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 주장에 대한 반론 3

① 교육부가 제시한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 측의 주장 즉, 「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로 재산세, 취득세를 낸다.」는 점은, 교육부 스스로가 자인(自認)하는 바와 같습니다.

② 그러나 교육부는 이 같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의 사실주장에 대해, 세제혜택(稅制惠澤)을 보고 있다면서 속칭 「물 타기」를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주장이야말로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도입배경 · 정책적 의사결정에 대해 무지(無知)한 의견표명이라 하겠습니다.**

③ 먼저, (a) 2004년 7월 26일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 2004-186호 및 (b) 2004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심사결정 제 2005-129호에서는, "유치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은 국립, 공립, 사립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사립유치원 등 개인사업자는 영리사업자나 비영리사업자의 구분이 불가하고, 엄밀히 말하면 개인사업자는 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면서,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영리사업자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④ 다만, 해당 결정은 "영리사업자에 해당됨에도 비영리 사업자로 구분하여 비과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취지는 시설확충을 사회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라면서, **「세금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없었던 당시 정부**

재정상황 때문에 정책적 장려의 일환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했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⑤ 그러므로 교육부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이 영리추구가 불가능하다는 식의 의미로 비영리」라는 단어를 활용하는 것은, 「교육부조차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도입배경 · 정책적 의사결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재(不在)하다는 것을 실토(實吐)」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⑥ 무엇보다, 「의료법인」이나 「법무법인」 또한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과 동일한 비영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비영리란 생명존중 · 정의구현 등 일정부분 공익적 목적을 가진 자들이 상인(商人)과는 격(格)이 다르다는 뜻일 따름이요,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의사나 변호사들이 호구지책(糊口之策)의 영리마저 추구할 수 없다는 뜻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⑦ 물론 혹자는, 의사나 변호사들이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다른 개인사업자들과 다르게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은 「원비」(Service Cost)와 「인상률」(Incentive)을 법령으로 완전히 통제당하고 있는 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다른 개인사업자와는 다른 세제혜택을 유지(維持)」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주장4] 학부모 부담금은 사립유치원에서 알아서 써도 된다. (개인용도 사용이 합법적이다)

⇒ (**사실관계 4**)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제33조(회계규칙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및 이에 따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11조(예산총계주의),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도 유치원회계에 포함하여, 교육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 개인이 설립 ·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경영자로 사립학교법 제51조에 따른 준용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29조, 제33조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적용을 받음

교육부 주장에 대한 반론 4

① 사유재산(私有財産)이란, 법률주체에게 사용 · 수익 · 처분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② 사립유치원 운영에 쓰이는 자금의 종류는 (a) 유아학비, (b) 특수목적 공적재정지원, (c) 학부모부담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a) 유아학비는 학비대납(유아교육법 제 24조)의 의미로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 직접 교부된다는 측면에서 「광의(廣義)의 공적재정지원(속칭, 지원금)」으로, (b) 특수목적 공적재정지원은 그 자체로 목적 외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협의(狹義)의 공적재정지원(속칭, 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③ 이 중에, (b) 특수목적 공적재정지원을 제외한 (a) 유아학비(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도781)와 (c) 학부모부담금(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은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사유재산입니다.

④ 여기에 대해 교육청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회계가 사립학교법 상 규제를 받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사립학교법 제 51조의 준용규정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주장은 「준용(準用)」과 「적용(適用)」의 법률적 차이를 간과한 채, 「준용의 의미마저 몰이해(沒理解)」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⑥ 준용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표준으로 삼아 적용하다."라고 할 것이나, 법률적 의미에서 준용은 "(a)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대상에 대해, (b)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修整)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의는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의 해당 웹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103&astClsCd=)

⑦ 다시 말해 준용은 (a) 규율대상의 동질성과 (b) 의무적 수정적용이 전제로 된 법률적 개념이라 할 것이며, (c) 규율대상이 이질적인 경우까지 (d) 무리하여 수정 적용할 수는 없겠다고 하겠습니다.

⑧ 특히 준용규정은, 속성상 적용대상의 불명확성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바, 규율대상이 이질적인 경우까지 무리하여 수정 적용될 염려가 있습니다.

⑨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어느 법령에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포괄적, 일반적으로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그 법령의 규정이 준용된다.(2015. 8. 27., 선고, 2015두41371판결)"고 하여, 사법적 실질(實質)이 다른 부분에까지 준용의 효력이 발휘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⑩ 그러므로 사립학교법 상 준용규정을 근거로, 「학교법인에 적용되는 재무 · 회계규제 전부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률적 오류(誤謬)」라고 하겠습니다.

⑪ 오히려 대법원 판례의 견해에 따른다면 「법인재산을 규율」하는 사립학교법 상 재무 · 회계규제나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이, 「(개인)사유재산권을 향유하는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준용의 진정한 의미에 부합하는 법해석 · 적용이라 하겠으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일관하여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 · 회계규칙을 입안에 달라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장5] 유치원 회계로 개인용도 사용하여 형사고발되어도, 무혐의 처분되고 있다. 유치원은 법률을 위반하고 있지 않다.

⇒ **(사실관계 5) 유치원 회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위반으로 **법령 위반행위는 분명**합니다. 이에, 관할청은 교육관계 법령 위반(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용도로 사용한 금액만큼 **유치원회계로 반환하라는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현행 유치원회계에서 개인용도로 사용한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 수준이 솜방망이**라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교육부 주장에 대한 반론 5

① 교육부 스스로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 관련 법원 · 검찰 선례를 자의적으로 평가하면서 입법적 불비인양 주장하는 것은, 선례의 진정한 의미를 탐독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 오류라 하겠습니다.

② 법원 · 검찰의 선례는, 입법적 불비 때문에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을 사법처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a) 공공성과 (b) 개인사업자성 · 사유재산성을 공히 존중했기 때문이며, 해당 쟁점을 비리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과 사유재산권의 문제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③ 더불어, 해당 법원 · 검찰의 선례는 유치원 운영의 적정성(교육 · 안전 · 인권 보장 등)에 문제가 전무(全無)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며, 만약 유치원 운영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별개의 사법처리가 이뤄졌을 것임이 자명합니다.

[주장6]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규칙이 없다.

⇒ (**사실관계 6**) 한유총 측에서 말하는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규칙이 없다"라는 주장은 한유총이 요구하는 **사유재산 공적사용료가 인정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수 없고 현행 법령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사립유치원에 적용되는 회계규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 주장에 대한 반론 6

①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 사립학교법 상 재무 · 회계규제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적용(適用)"이 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틀린 주장」이며, 사립학교법 제 51조의 준용규정이 있다는 것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교육부 주장에 대한 반론 4)

② 준용에 대한 법률적 의미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 사립학교법 상 재무·회계규제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쟁점 또한 위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심지어 **유아교육법 제 19조의 7은, 국·공립 유치원 회계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이 부재하다는 것이야말로, 「법률적 진실」**이라 하겠습니다.

해당 YTN 인터뷰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발언

((https://www.ytn.co.kr/_ln/0103_201810251404481545))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개보수도 해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수익의 10% 정도의 건축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적립한 금액은 나중에 설립자가 본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재무회계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다른 초, 중, 고등학교... 사립 학교들과는 다른 거거든요.

④ 특히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017년 2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여 사립유치원에 맞는 세입·세출 예산과목을 신설(적립금, 차입금)한 바, 이것을 설립자 본인이 수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는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인터뷰를 토대로, 해당사실을 교육부에 정식질의」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공식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⑤ 유은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2018년 10월 25일 YTN 인터뷰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은?...유은혜 부총리에게 직접 듣는다」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유은혜 장관의 말대로라면 현재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이 교육부와 대치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감사결과와 실명이 공개된 유치원들이 유치원 회계를 유용했다는 비난을 들을 이유조차 없습니다. (기자님들께서 유은혜 장관에게 직접 질의해주시고,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장7] 유치원 운영을 위해 원장 개인이 차입해서 쓰지만, 유치원 회계 상 상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 (**사실관계 7**) ’17년 2월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별표 5] **세입**에는 **차입금 과목이 마련**되어 있으며, [별표 6] **세출**에는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 과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주장에 대한 반론 7

①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상환금 회계처리는 본래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 6항 단서규정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②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이 주장하는 것은, 교지와 교사 설립에 막대한 사재가 투입되고 유지 · 보수 · 운영에 무한책임을 설립자가 지는 바, 「해당 사재의 원금 · 이자상당의 수익이 보장되어야, 설립자 또한 파산 · 신용불량자의 지위를 면한 채 유아교육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것은 아주 형이하학적인 민생(民生)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장8] 유치원의 공익적 유아교육 제공을 고려해 재산권 제한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 (**사실관계 8**) 헌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되려면 교지·교사의 제공에 강제성이 있어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사립유치원의 인가행위는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그 설립 기준에 따른 시설·설비를 갖추어 자신의 **교육사업에 제공한 것**이므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자신이 소유·사용 중인 토지·건물에 대해 사용료를 인정하는 **타 입법례가 없고** 그 대가를 **별도로 보상할 이유도 없습니다.**

교육부 주장에 대한 반론 8

①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이 시설사용료 등의 주장을 하는 것은, 「설립자가 교지와 교사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설립한 재원의 원금과 이자 상당의 수익을 원천적으로 향유할 수 없도록 정책적으로 제약(制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② 이정도의 투자수익이 보장된다면, 다시 말해, 설립자가 『파산 · 신용불량자의 지위를 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시설사용료 따위를 별개로 주장할 이유도 없습니다.

③ 오히려 교육부야말로 시설사용료 쟁점에서는 "자신이 소유·사용 중인 토지 · 건물"이라면서 교지 · 교사의 사유재산성을 들어 항변하고, 교지 · 교사설립에 투여된 원금과 이자 상당의 수익향유 쟁점에 대해서는 "교육적 목적으로 제공했다"면서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들어 항변하는 바, 이것이야말로 교육부의 일구이언(一口二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③ 심지어 교육부는, 강제수용이 아닌 이상 적당한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법률적으로 폭력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항만·고속도로 등의 민간투자사업(BTL)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들 또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을 통해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장9] 어린이집은 임대어린이집이 인정되어 임대료가 인정되듯이 유치원도 자기소유 건물 ·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스스로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사실관계 9**) 사립유치원 설립 · 경영자는 교육용 재산인 교사(校舍)와 교지의 소유의무가 있습니다(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 운영 규정 제7조). **사립학교 설립주체의 소유 의무**는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규제로 **'97년 이후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주장에 대한 반론 9

① 이에 대한 주장은 「교육부 주장에 대한 반론 8로 대신」 할 것입니다.

② 부가적으로, 설립자가 교지와 교사를 설립하는 데 투여한 비용과 이자상당의 수익이 보장된다면, **다시 말해, 설립자가 파산 · 신용불량자의 지위를 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시설사용료 따위를 별도로 주장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

[주장10] 유아 3법과 정부정책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 **(사실관계 10)** 현재 개인이 설립하는 사립유치원은 그 소유권이 설립자이며, 폐원할 경우 모든 재산이 설립자에게 귀속되어, 다른 초·중·고 사립학교*와 달리 설립자의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사립 초·중·고 : 학교법인만 사립학교 설립 가능. 설립자의 재산 출연 필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 국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귀속

교육부 주장에 대한 반론 10

① 만약 교육부와 같은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자발적 폐쇄가 자유롭게 가능」 해야 할 것입니다.

② 그러나 현실은, 교육부 스스로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자발적 폐쇄마저 형사처벌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③ 자발적 폐쇄도 자유롭지 못하게 형사처벌까지 운운하며 겁박하는 한편, 폐쇄를 하면 그 이후에는 사유재산이라 하는 교육부의 태도는, 관할청이 폐쇄를 인가

해주기 전까지는 사유재산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복심(腹心)으로까지 비춰질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장11]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라 학부모에게 지원금을 주어야 하는데, 유치원에 직접 주고 감사하려고 한다.

⇒ **(사실관계 11) 현재의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방식도 학부모가 교육기관을 직접 선택**하고, 정부는 그 선택에 따라 기관 당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교육부 주장에 대한 반론 11

① 유아교육법 제 24조 제 2항은, 「유아학비를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이 유아학비를 직접 지급받고 있는 상황 자체가 「예외적인 상황」인 것은, 그 자체로 사실입니다.

② 특히, 교육부는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이 외부감사(External Audit)을 피하기 위해, 학부모에 대한 유아학비 직접지급을 요구한다는 낭설(浪說)을 적시하고 있는 바,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밝히는 바입니다.

③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 19조의 평가라는 외부감사를 통해 꾸준히 유치원 운영 · 재무 · 회계를 검토 받아 왔으며, 해당 외부감사는 유치원 운영의 적정성이 보장되면, 생업(生業)이라는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현실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도 · 계도차원에서 마무리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④ 이 때문에, 지금까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던 것이며,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과 일선 교육지원청 구성원들과의 결탁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⑤ 그러나 현재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이 문제 삼는 감사는, (유아교육법 상 평가가 아니라)공공감사에관한법률 상 자체감사로서, 해당 법률의 감사는 본디

행정행위를 발(發)하는 공공기관 스스로의 비위를 자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 하겠습니다.

⑥ 다시 말해, 1원 한 푼이라도 감사관에 의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금 횡령 · 유용으로 적발 · 처벌되는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상 자체감사의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을 감사했으니, 응당 여러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⑦ 그러므로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이 반발하는 감사는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상 자체감사이며, 이것이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을 감사하는 기준으로도 적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중규제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⑧ 부가적으로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 측은, 유아학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⑨ 왜냐하면, 유아학비 지급의 산정방식 · 교사 1인 당 담당할 수 있는 원아의 수 · 구성원들의 최저임금이 법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학비정도의 금원은 구성원들의 인건비나 약소한 제세공과금 정도로도 태부족이기 때문입니다.

⑩ 그러므로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이 공적재정지원 특히, 유아학비 부문을 횡령하거나 유용했다는 주장은, 해당 금원이 사유재산(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도781)이라는 측면에서도 부당하지만, 유아학비정도의 금원은 인건비와 약간의 제세공과금 납부로도 태부족인 것이 현실이므로, 그 자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